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1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폐광지역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신설(이철규 의원안)	2

I. 개요

1.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001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철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5. 30.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 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폐광지역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신설(이철규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폐광지역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안 제121조의36 신설)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 ○ 지정면세점내 판매가능 면세물품: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 지정면세점내 구입한도: 1회 800달러, 연 6회이내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 의결을 전제로 함

* 이철규의원안 2024. 5. 30. 발의(의안번호 15)

☐ 개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¹⁾ 내 지정면세점에서 여행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함)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제14호)과 함께 발의됨.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²⁾이 시행된 이후 석탄산업이 사양화 되고, 199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³⁾에 의하여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결정되면서 해당 공사가 소유한 탄광도 단계적으로 조기폐쇄⁴⁾하기로 하여,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가 계속되고 있음.

폐광지역의 인구변화 현황을 보면, 1988년 대비 2023년 평균 인구 감소율은 50.5%로, 강원도 정선 71.5%, 태백 66.4% 등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폐광지역의 인구변화]

(단위: 명, %)

구 분	합계	강원도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소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1988년(A)	805,152	441,370	115,175	132,370	74,048	119,777	144,502	87,230	132,050
2023년(B)	398,668	172,887	38,702	62,651	37,332	34,202	95,772	61,254	68,755
1988년 대비 인구감소율 (A-B)/A*100	50.5	60.9	66.4	52.7	49.6	71.5	33.8	29.8	4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현황('23.12.31 기준) 재인용

□ 개정안은 이러한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

2) 국내 무연탄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공급초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었던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하여 1988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 정책을 담은 석탄 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9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비경제 탄광을 폐광하거나 감산하고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3)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1996. 6월)에 따르면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대한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 규정됨.

4) 2023년 전남 화순탄광, 2024년 태백 장성탄광, 2025년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폐광 예정(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6.29.)

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개정안과 같은 지정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5)에 근거하여 간접세 일반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법」 6)에 근거한 보세판매장과는 구별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내국인 면세점은 이러한 과세방식의 예외적 사례이며, 현재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제주도 여행객의 범위를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출항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7)하여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대상을 한정할 수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6)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있기 때문이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등 전국 7개 시·군 지역⁸⁾으로서, 모두 내륙지역이므로 섬인 제주도와 달리 여행객의 출입관리가 어려워 면세점 이용자를 제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외국의 내국인 면세점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오키나와)과 중국(하이난) 등이 있는데 이곳들은 모두 지리적으로 여행객의 면세점 출입관리가 유리한 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둘째, 폐광지역에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면세점의 소비는 증가하더라도 면세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축소로 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요청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8) 강원(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북(문경시), 충남(보령시), 전남(화순군)